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송재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2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29일

발 의 자 : 송재혁, 오한아 의원(2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경영, 김기대,
김기덕, 김생환, 김재형,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봉양순,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이광성,
이정인, 장상기 의원(17
명)

1. 제안이유

- 1인 가구 증가 및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쇼핑과 식음료 배달 주문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이스팩 사용량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이스팩은 플라스틱 성분의 젤이 들어 있는 형태로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버려짐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 따라서 아이스팩 수거·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며, 더 나아가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이스팩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유도 및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이행실태의 점검 및 사업 종료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8조)

라.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친환경 아이스팩”이란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를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아이스팩 순환”이란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이하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유도) ① 시장은 아이스팩의 수거, 재사용 등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의 사용
2.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3.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관련 기업, 시민 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활성화 사업 이행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4.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비 지원 등) 시장은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비, 설치비, 조달수수료
2. 아이스팩 수거·세척·소독·수요처 운반 등 관련 관리 비용
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 사업을 위한 각종 홍보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이행점검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의 이행실태 점검 등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활성화 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은 자치구는 분기별로 사업수행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완료 보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순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102100000002
------	------------------

비용추계서

요청인 : 송재혁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10.21	
회신일 : 2021.10.27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 I. 비용추계 요약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조(사업비 지원 등)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안 제6조제1호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제6조제2호 아이스팩 수거소독 등, 제6조제3호 및 제4호 홍보비 지원

나. 전제

- 아이스팩 수거함은 서울시 426개 주민센터에 2022년 설치하는 것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함(추계기간 이후로도 계속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4,710,2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안 제6조제1호)		85,200	-	-	-	-	85,200
	아이스팩 수거소독 등 (안 제6조제2호)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홍보비 (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소계(b)		1,010,200	925,000	925,000	925,000	925,000	4,710,200
□ 총 비용(b-a)			1,010,200	925,000	925,000	925,000	925,000	4,710,200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54

e-mail : pjooyong@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안 제6조제1호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제6조제2호 아이스팩 수거·소독 등, 제6조제3호 및 제4호 홍보비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 85,200천원
= 수거함 단가×426개 주민센터×1년(2022년)
= 200천원×426개×1년
※ 수거함 단가 : 2021년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사업’ 예산의 아이스팩 수거함 제작 단가 200천원 준용
- 아이스팩 수거·소독 등 = 4,500,000천원
= 자치구당 연간 수거·소독 등 비용×25개 자치구×5년
= 36,000천원×25개×5년
※ 자치구당 연간 수거·소독 등 비용 : 2021년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사업’ 예산의 시·군당 연간 아이스팩 수거·소독 등 위탁관리비 36,000천원 (월 3,000천원×12월) 준용
- 홍보비 = 125,000천원
= 자치구당 연간 홍보비×25개 자치구×5년
= 1,000천원×25개×5년
※ 자치구당 연간 홍보비 : 2021년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사업’ 예산의 시·군당 연간 홍보비 1,000천원 준용

[참고자료] 2021년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사업’ 예산 사업설명서

[참고자료] 2021년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사업' 예산 사업설명서

아이스팩 순환 사업(주민참여예산)(자체/지원) (사업명세서 1434페이지)	정책사업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단위사업	자원순환 역량강화
	기준보조율(%)	도 100
	위원회명	도시환경위원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2019년 이전	2020년 투자			2021년 예산안 (C)	2020년 본예산 대비 증감 (C-A)	향후투자	비고
			계 (A+B)	당 초 (A)	추 경 (B)				
계	220,000					220,000	220,000		
국 비									
도 비	220,000					220,000	220,000		
시군비									
기 타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홍보물 사전심의	민간위탁 (대행) 사전심의	시범사업평가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10월	-	-	-	-	-	-	-	-

□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

(기준 : '20. 10. 31.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확보액(A)	사업비 집행 현황			집행률(%) (B/A)	사업 시행방법			비고
		집행누계액 (B)	계약액	집행(계약) 일 자		도직접	재배정	시군 보조	
계									
2018년									
2019년									
2020년									

- '20년 추진 실적 : 해당 없음
- 사업추진 자체평가 : 신규사업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임양선 (8008-3520)	염호근 (8008-4257)	박순영 (8008-4258)

□ 세부사업 설명서

1) 사업 목적

- 배달문화 확산으로 아이스팩 사용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필요 수요처로 제공하는 순환체계 구축

2) 사업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경기도 자원순환기본조례」 제5조(도지사 등의 책무)

3) 사업 집행절차

○ 추진계획 수립(1월) → 사업추진 시군 선정(2월) → 사업비 교부(3월) → 사업추진(3월~11월) → 정산 및 결과보고(12월)

4)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량 : 10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5)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 : 해당 없음

6)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편성목 (통계목)	부기명	산출내역	2021년 예산안	2020년 예산	비고 (증감)
계			220,000		220,000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아이스팩 순환	- 아이스팩 수거함 제작 200천원 × 150개	30,000		30,000
		- 수거, 소독 등 위탁관리비 3,000천원 × 6월 × 10개 시군	180,000		180,000
		- 홍보비 1,000천원 × 10개 시군	10,000		10,000

7)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